

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	법인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(전화번호:)	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		
신청내용	거래인증업무			
	주요 장비의 개요			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$$\frac{1}{\sqrt{2}}, \frac{1}{\sqrt{2}}, \frac{1}{\sqrt{2}}$$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미래 창조과학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1부 2. 「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